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허재창**

-
- I. 서론
 - II. UCP 600이전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 III.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 IV.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 V. 결론
-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인 수익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시하여야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신용장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original)인 것이 원칙이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은행의 관행이다.

* 본 연구는 저자가 캐나다 UBC의 Faculty of Law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작성되었음.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동 경영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예전에 수기로 작성되거나 타이핑된 서류의 시대에는 원본서류를 둘러싸고 별 문제가 없었으나, 테크놀로지의 발전 및 새로운 서류 작성방법의 출현은 원본과 사본의 구별을 육안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처음으로 UCP 400 제22조 (c)항에 원본서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UCP 500 제 20조 (b)항 및 (c)항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후 UCP 600 개정시 상기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기준으로 제17조에서 관련규정을 두어 원본서류를 둘러싼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이에 은행,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 신용장 관계자들은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UCP 600하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개정 내용의 검토와 이들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국내에서는 남풍우(2001), 김종칠(2001), 유재걸·한수범(2006)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문들은 주로 UCP 500하에서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세 번째의 논문은 원본서류에 대한 UCP 600 최종개정안의 고찰로 UCP 600과 UCP 500의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면에서의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의 수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P 6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UCP 600 이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원본서류에 관한 기준의 변화와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원본서류에 관한 개정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여 원본서류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UCP 400과 UCP 5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대한 관련 조항의 내용,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UCP 600하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대한 관련조항의 내용, 각종 웹사이트 및 국내·외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하였다.

II. UCP 600이전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이하에서는 우선 UCP 600이전의 관련 규정을 크게 UCP 400하의 관련규정, UCP 500하의 관련규정 및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UCP 4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UCP 400 이전에는 원본서류가 무엇인가를 UCP에 규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무역절차간소화를 위해 서류작성의 기술이 진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서류가 작성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해 작성되는 서류를 신용장거래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UCP 400에 신설규정으로 제22조 (c)항이 도입되었다.¹⁾

1) 원본서류로 수리되는 서류의 작성방법

UCP 400 제22조 (c)항은 원본서류로 수리되는 서류를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복사기기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둘째, 자동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셋째, 탄소복사지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이다.

2) 수리 요건

제22조 (c)항은 상기 서류가 원본으로 수리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원

1) 朝岡良平, 実務家のための逐条解説信用状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5, p.236; Howard N. Bennett, "Originals sin under the UCP",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1, p.89. 본 조항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Bernard Wheble, DOCUMENTARY CREDITS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ICC Publication No.411, 1984, pp.41~42 및 飯田勝人, "信用狀取引における書類の原本とコピー", 国際商務論の諸問題-その理論と取引慣行, 同文館, 1998, pp51~52 참조.

본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 둘째, 필요한 경우 서류가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²⁾의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다.³⁾

2. UCP 5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UCP 500은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UCP 400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또한 사본에 관한 정의규정과 복수서류의 요건을 신설하였다.⁴⁾

1) 원본서류로 수리되는 서류의 작성방법

UCP 500 제20조 (b)항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서류로 수리한다. 첫째, 복사기기, 자동화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한 것 둘째, 복사지로 한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 팩시밀리서명, 천공(穿孔)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방법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UCP 400의 제22조 (c)항과 비교하여 내용면에서 두 가지 개정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제20조 (b)항 첫 문장의 두 번째 조항에서 “또한”(also)의 문구의 삽입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두 가지 종류의 수리가능한 서류 즉, 제20조 (b)항 범위 밖의 그 자체로 원본인 서류와 제20조 (b)항과 관련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b)항의 범

2) ICC Publication No.411은 인증(authentication)의 정의를 “어떤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발신자로부터 온 것임을 그 메시지의 수신자에게 확신시키는 물리적,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메시지에 표시하는 것이고, 서명에 사용된 사람의 이름 또는 두문자 또는 기호라는 서명의 제한적 정의와는 대조적인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가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서류에 발행자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명, 스탬프 또는 이에 대신하는 무엇인가의 표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朝岡良平, 前掲書, p.238.

3) Ross P. Buckley,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GW J.Intl’ L. & Econ., Vol.28, 1995, p.291.

4) 飯田 勝人, 前掲論文, pp.51~52.

위내에 있는 서류들은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필요한 경우 서명되어 있는 경우 원본으로 수리한다. 둘째, 전통적인 것에서 전자적인 것까지 어떠한 형태의 서명도 수리가능하도록 하는 정교한 서명개념의 추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방식의 삽입은 디지털 서명기술을 수용하는 한편 기호(symbol)의 언급은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각인”(chop mark)을 포함한다.⁵⁾

2) 사본서류의 요건

제20조 (c)항 (i)호에서는 사본의 정의에 대하여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사본으로 수리하며 사본은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CP 400의 제22조 (c)항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신설조항이다.

3) 복수서류의 요건

제20조 (c)항 (ii)에서는 “신용장에서 정부분(正副本), 2부, 2통 등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원본 1통과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출함으로써 충족되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UCP 400의 제22조 (c)항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신설조항이다.

3.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에서의 원본 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1) 배경

UCP 500에서는 제20조 (b)항에 원본에 관한 세 가지 기본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은행이 신용장하에서 무엇이 원본서류인지, 또한 그러한 서류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ICC 은행위원회에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원본에 관한 상세한 관습을 규정한 “UCP 500 제20조 (b)항의 문맥에 있어 “원본”서류의 결정(The

5) Howard N. Bennett, op. cit., p.91.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500 sub-Article 20(b)"이라는 제목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1999년 7월 2일 발표하였다.⁶⁾

2) 성격

상기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은 UCP 500 제20조 (b)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은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정확한 해석일 뿐이다.⁷⁾

이 결정문은 원본서류와 관련된 국내·외의 여러 판결 등에서 직접 수용되고 있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2007) 338)에서도 이를 유효한 해석론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결과로 몇몇 법원은 후술하는 최초로 영국법원에서 취한 접근을 거부하였고 결정문에 의거한 관습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⁹⁾

3)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내용

(1) 원본성의 결정¹⁰⁾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사본과 구별되는 원본서류로 보이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UCP 500 제23조 (a)항 (iv)호 또는 제34조 (b)와 같이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외관상 원본이 유일한 원본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없다. 은행은 서류발행인이 이를 명백히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하

6) Background Article 1 of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7) Original documents of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8) "UCP 600의 제17조에 추가하여 UCP 제20조 (b)항의 문맥에 있어 "원본"서류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ICC 은행위원회 정책 문서, 서류 470/871(Rev)은 원본과 사본에 관한 추가 지침으로 권고되며 UCP 600하에서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9) James E. Byrne, THE MAJOR STAGES IN THE EVOLUTION OF LETTER OF CREDIT PRACTICE[PART 2 OF 2], Documentary Credit World, January, 2004, p.21.

10) Article 2 Determination of originality of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백지위에 사진복사(photocopy)하거나 탄소카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사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되며, 반면에 서류발행인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텍스트로부터 백지상에 서류를 인쇄하는 경우는 원본을 작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팩시밀리서명(전자서명)이 있는 서류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텍스트로부터 발행인의 서두(letterhead)와 서명도 포함하여 그대로 인쇄되는 서류는 서류 발행인이 원본을 작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은행에서 원본으로 수리된다.

(2) UCP 제20조 (b)항의 정확한 해석¹¹⁾

은행은 신용장하에 제시된 서류가 특히 문면상 원본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심사한다. 은행은 서류자체에서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되지 않는 한, 명백히 서류 발행인의 외형상 실물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은 포함한 어떠한 서류도 이를 원본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서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원본으로 취급되어 진다.

(i) 서류 발행인의 손으로 작성되거나, 타자되거나 스탬프가 찍힌 것으로 보이는 것

(ii) 서류 발행인의 원문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iii) 원본이라고 표시된 것. 다만 그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는 제외(예를 들어 그것이 다른 서류의 사진복사본(photocopy)으로 보이고 원본의 기재가 다른 서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수기서명된 서류

상기 (i)와 일치하는 한, 은행은 서류 발행인에 의하여 수기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서류도 원본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수기서명된 환어음이나 상업송장은 그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리 인쇄되었거나 탄소복사지로 복사되었거나, 복사기기, 자동화기기, 컴퓨터기기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

11) Article 3 Correct interpretation of sub-Article 20(b) of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부를 불문하고 원본서류로 취급된다.

② 팩시밀리 서명서류(전자서명이 있는 서류)

은행은 팩시밀리 서명을 수기서명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서류 발행인의 팩시밀리 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도 역시 원본서류로 취급된다.

③ 사진복사본(photocopies)

은행은 다른 서류의 복사본인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만일 사진복사본이 서류 발행인의 수기표시에 의하여 완성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는 위의 (i)에 일치하게 되며 그 결과 서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본서류로 취급된다. 만일 서류가 백지가 아닌 고유양식용지에 텍스트를 사진복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는 위의 (ii)에 일치하게 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본 서류로 취급된다.

④ 팩스로 제시되는 서류

은행의 팩스기계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를 원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팩스에 의한 제시를 허용하는 신용장은 팩스에 의해 제시되는 모든 서류의 원본 제시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원본임을 나타내는 기재

상기 (i)와 (iii)항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에 일치하는 한, "원본"이라는 단어가 스탬프로 찍힌 서류는 원본서류로 취급된다. 서류상에 "복원본" 또는 "세 통 중 셋째"라는 표현은 또한 이것이 원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원본은 동일 기간과 일자의 다른 서류가 사용된다면 무효하는 기재를 서류상에 함으로써 나타낼 수도 있다.

⑥ 원본임이 아님을 나타내는 기재

다른 서류의 진정한 사본이라든지 다른 서류가 유일한 원본이라는 서류상의 표현은 그것이 원본이 아님을 나타낸다. 서류상에 "고객용 사본" 또는 "송하인용 사본"이라는 표현은 원본성을 배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

⑦ 원본이 아닌 서류

첫째, 팩스 기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둘째, 수기표시에 의하거나 고유양식용지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내용을 사진복사함으로써 완성되지 않는 다른 서류의 사진복사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셋째, 서류상에 그것이 다른 서류의 진정한 사본이라거나 다른 서류가 유

일한 원본이라고 기재된 경우

위에서 살펴본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서류가 원본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련된 불일치를 감소시켰다.¹²⁾

Ⅲ.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의 수리요건

1993년에 제정된 UCP 500하에서는 원본서류의 정의에 관하여 상당한 혼돈이 있었다. 수년간의 대혼란 후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 7월 2일 ICC 은행위원회는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것의 발행과 용인의 결과로 UCP 작성 그룹은 이 결정문을 UCP 500 제20조 (b)항의 개정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UCP 600 제17조는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과 ISBP (2003)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적어도 한 부의 원본제시

UCP 600 제17조 (a)항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서류는 적어도 한 부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설조항으로 ISBP (2003) 32를 간소화 한 것으로, 서류 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것이며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의 적어도 한 부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¹⁴⁾

12) Standard Chartered Bank, UCP 600-An analysis of Articles 14-18 and 28, NEWSLETTER Issue 4, May 2007, p.3.

13)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shing, Inc., 2007, p.76.

14) Ibid., p.76.

2. 원본의 표시

UCP 600 제17조 (b)항에서는 "은행은, 서류 자체에 이 서류는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¹⁵⁾가 없는 한, 서류발행인의 외형상 실물서명, 부호, 스탬프, 또는 라벨을 갖고 있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설조항이지만 전술한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일부¹⁶⁾를 재진술하고 있으며,¹⁷⁾ 서류가 어떻게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¹⁸⁾

3. 원본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

UCP 600 제17조 (c)항에서는 "서류에 달리 표시가 없는 한, 은행은 첫째, 서류발행인의 손으로 작성된, 타자된, 천공된 또는 스탬프가 찍힌 것으로 보이는 서류, 또는 둘째, 서류발행인의 원문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또는 셋째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¹⁹⁾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에 비추어 UCP 500 제20조 (b)항을 재구성한 것으로,²⁰⁾ 종전의 복사기기, 자동화기기 또는 컴퓨터기기에 의한 서류작성방식 및 복사지(carbon copies)에 의한 언급을 삭제하고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일부²¹⁾를 재진술하고 있으며,

15) 이러한 예는 명백한 원본이 "사본"이라고 스탬프된 경우일 것이다. EP Elling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their development and the current revision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7, p.169.

16) Banks treat as original any document bearing an apparently original signature, mark, stamp, or label of the issuer of the document, unless the document itself indicates that it is not an original.

17) James. 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p.154.

18) Standard Chartered Bank, *op. cit.*, p.3.

19) 이는 covering letter에 첨부서류를 원본으로 기술하고 있으니 이들 서류중의 한 서류상의 부기(notations)에서 그 서류가 사본이라고 명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P Ellinger, *op. cit.*, p.169.

20) James. E. Byrne, *op. cit.*, p.154.

21) Accordingly, unless a document indicates otherwise, it is treated as original if it:

서류가 어떻게 원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를 기술하고 있다.²²⁾

한편 UCP 500 제20조 (b)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팩시밀리 서명, 스탬프에 의한 서명방법과 같은 원본서류의 정의와 독립되는 쟁점은 UCP 600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해석의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신설조항인 UCP 600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³⁾

4. 사본서류의 요건

UCP 600 제17조 (d)항에서는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ISBP(2003) 34를 반영한 것이다. 즉, 신용장에서 사본 한통만 요구한 경우 사본대신에 원본이 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원본제시를 금지하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만일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원본이 사본대신 제시될 수 있다.²⁴⁾ 이와 동일한 취지가 ISBP(2007) 31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사본서명이 필요없다는 규칙을 규정한 UCP 500 제20조 (c)항 (i)호의 규정은 UCP 600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ISBP (2007) 32에 “서류의 사본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²⁵⁾

5. 복수서류의 요건

UCP 600 제17조 (e)항에서는 “신용장이 “in duplicate(두 통으로)”, “in two fold(두 겹으로)” 또는 “in two copies(두 부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

(A) appears to be written, typed, perforated, or stamped by the document issuer's hand; or (B) appears to be on the document issuer's original stationery; or (C) states that it is original, unless the statement appears not to apply to the document presented.

22) Standard Chartered Bank, op. cit., p.3.

23) Janet Ulph, "THE UCP 600: DOCUMENTARY CREDIT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Law, June, 2007, p.365.

24)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ISBP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58.

25) James. E. Byrne, op. cit., pp.156~157.

여 복수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부수의 사본을 제시하면 이를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신용장이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적어도 한 통의 원본이 나머지 부수의 사본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UCP 500 제20조 (c)항 (ii)호의 규칙을 수정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면 UCP 600 규칙하에서는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적어도 한 통의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은 나머지 서류는 사본 또는 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서류가 UCP 500하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부수의 사본으로 되거나 또는 UCP 500하의 규칙과는 달리 모두 원본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²⁶⁾

결론적으로 UCP 600에서의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은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원본과 사본에 관한 신용장관습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과 ISBP(2003) 32를 모델로 한 것이다.²⁷⁾ 이는 UCP 500과 달리 원본 표시의 요건을 제거하였고 또한 UCP 500에서 언급하는 서류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서류 발행자의 서명, 육필, 원문구용지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서류가 서류발행자에 의해 손으로 작성되었거나 그에 의해 수기서명된 경우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원본이다. 만일 서류가 서류발행자의 원문구용지에 작성된 경우 원본표시가 없고 실물서명(original signature)이 없더라도 원본이다. 이와 같이 UCP 600은 원본서류에 관한 규칙을 간소화하여 신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류 작성 및 서류심사를 용이하게 위험이 덜하도록 하고 있다.²⁸⁾

지금까지 살펴본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UCP하의 관련 규정의 비교를 정리·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6) Ibid., p.157.

27) Ibid., p.154.

28) Ravi Mehta, “Original Document” Revisited, LC VIEWS Newsletter No. 105, p.5.

<표 1>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UCP하의 관련 규정의 비교

구 분	UCP 400 제22조	UCP 500 제20조	UCP 600 제17조	비고
적어도 한 통의 원본 제시	-	-	a항	-서류제시에 관 한 일반원칙 -ISBP(2003) 32 반영
원본의 표시	-	-	b항	ICC 원본 결정문 part 3.1
원본을 표시 하는 다른방법	c항	b항 첫째 문장	c항	ICC 원본 결정문 part 3.1
-서명방법의 추가	-	b항 둘째 문장	-	UCP 600 제3조
사본서류의 요건	-	c항 i호	d항	ISBP(2003) 34 ISBP(2007) 31
-사본서명의 불필요	-	c항 i호	-	ISBP(2007) 32에 추가됨
복수의 서류의 요건	-	c항 ii호	e항	

자료: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저자 직접 작성

IV.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이하에서는 원본서류와 관련된 국내·외의 판례를 살펴보는 데, 이를 통해 신용장 관계당사자들이 원본서류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Glencore International A.G.와 Bayerische Vereinsbank v. Bank of China²⁹⁾

이 사건은 매도인인 Glencore와 매수인인 Shan He Trade 회사간에 체결

29) [1996] 1 Lloyd's Rep. 135

된 1,500톤의 알루미늄 주괴에 관한 매매계약을 수반한다. 대금결제는 취소 불능신용장에 의해 행해졌다. Bank of China는 사실상 두 개의 신용장을 발행했는데, 하나는 800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700톤에 대한 것이다. 신용장은 각종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는 상업송장, 제조업자의 증량/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다.

발행은행인 Bank of China는 수익자의 증명서가 원본도 아니고 UCP 500 제20조 (b)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본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절하였다. Glencore가 제공한 증거를 보면 회사가 작성한 서류는 먼저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필요한 수만큼 사진복사되었다. 프린터와 사진복사 기기 모두 똑같은 패선 없는 백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의 눈으로서는 프린트 판과 사진복사된 판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류 중의 하나가 서명되었지만 그것이 프린터에 의해 작성된 원본서류인지 사진복사본 중의 하나인지를 말할 수 없다. 소송의 목적상 서명된 서류는 사진복사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공소원은 “서류가 원본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제20조 (b)항에 기술된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 작성된 모든 서류는 그것이 원본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원본”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실물서명(original signature)은 사본을 원본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인정된 사본(authenticated copy)을 만들고, 제20조 (b)항은 서명을 원본으로 표시하기 위한 대체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³⁰⁾

2. Kredie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³¹⁾

미국회사인 Karaganda는 자기 거래은행인 Midland Bank에게 고철화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해 스웨덴 수익자인 Michael Goldstein AB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Michael Goldstein은 Kredietbank에

30) Ravi Mehta, op. cit., p.2; Felicity Monteiro, Wilson Harle, "The UCP 600", New Zealand Law Journal, September, 2007, p.291.

31) [1999] 1 All ER (Comm) 801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Kredietbank는 서류를 런던에 있는 Midlank Bank에 보냈다. 同은행은 보험증권에 UCP 500 제20조 (b)항에 요구하는 원본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문제의 보험증권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letterhead가 있는 종이에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된 후 사진복사되었으며, 사진복사본은 ‘duplicate’라고 스탬프를 찍었다. 둘 다 서명이 되었으며 보험증권은 ‘duplicate’라고 스탬프를 찍은 사진복사본과 함께 제시되었다. Glencore사건과 달리 하나는 출력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복사된 것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출력된 보험증권은 문면상 명백히 원본서류였다. 그렇지만 ‘원본’이라는 표시는 없었다.

공소원은 “제20조 (b)항의 목적은 신용장하에서 수리되는 서류의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넓히는 것이고, 同조항은 사진복사본과 같은 다른 서류의 사본인 서류에 적용될 뿐이며, 명백히 원본인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본’이라고 스탬프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부연하면 Kredietbank 법정은 Glencore에서 문제의 서류는 사진복사본이고, “원본”의 해석에 관한 Glencore에서의 진술은 명백히 원본인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Kredietbank 법정은 은행은 서류작성 방법에 관계없이 제20조 (b)항 도입이전에 원본으로 수리되었을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³²⁾

3. *Cré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s Banks*³³⁾

이 사건은 매도인인 Societe J. Lalanne와 매수인인 Jiangsu Overseas Group Corporation간에 Gabon에서 Zhangiangang으로 가는 목재의 매매계약을 수반한다. 대금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China Merchants Bank(CMB)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것은 프랑스 은행인 *Crédit Industriel et*

32) Karen Scott, DOCUMENTARY CREDITS: ANOTHER ORIGINAL STORY,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3, p.153; Alexia Ganotaki, "Originals sin", *Trade & Forfaiting Review*, Vol 6 Issue 4, 2003, p.6; Ravi Mehta, *op. cit.*, p.2.

33) [2002] EWHC 973 (Comm)

Commercial(CIC)에 의해 확인되었다. 신용장은 포장명세서, 중량/품질증명서를 포함하는 몇 개의 서류들을 요구하였다. 10월 7일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는 10월 18일 CIC에 의해 수리되어 발행은행인 CMB로 발송되었다. 10월 19일 서류 수령시 발행은행인 CMB는 특히 포장명세서, 중량/품질증명서의 원본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류인수를 거절하였고 CIC에 대금상환을 거부하였다. 제출된 서류상에 수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명백히 스탬프되었으며 또한 잉크서명도 있었다. 그렇지만 서류에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진기한 것은 법원은 스탬프나 서명이전에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사건은 이전의 두 사건의 판결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명백히 원본이 아닌 서류는 그것이 제20조 (b)항에 기재된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로 원본이든 아니든 간에 同조항에 따라 원본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lencore). 그러나 명백히 원본이거나 UCP 이전에 원본으로 수리되었을 서류는 그것이 제20조 (b)항의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본 표시가 없더라도 수리되어야 한다(Kridietbank). 현재의 사건에서 발행은행에 제출된 증명서는 UCP 400과 UCP 500의 도입이전에 원본으로 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은행이 UCP 400/500이전에 원본으로 수리되어야 할 그러한 서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만들었다.³⁴⁾

4. Western International Forest Products Inc., v Shinhan Bank³⁵⁾

1993년 원고인 Western International은 한국회사인 Nam Moon社에 목재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재는 Alaska에서 한국으로 선적되었다. 대금결제를 위해 Nam Moon 회사는 피고인 Shinhan은행에 Western International을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신용장의 지급인은 뉴욕시의 Shinhan 은행 뉴욕지점이었다. 동신용장은 1983

34) Karen Scott, op. cit., p.157; Felicity Monteiro, Wilson Harle, op. cit., p.291; Alexia Ganotaki, op. cit., pp.6~8.

35) 93 Civ. 7301 (MG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D. New York. Aug. 16, 1994.

년 개정 UCP 4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을 위한 필요서류 중의 하나인 검사증명서는 “한국의 Nam Moon社의 사장인 신삼태氏에 의해 발행되어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1993년 7월 9일 신氏는 Alaska에서 목재를 검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Western에게 팩스로 보냈다. 검사증명서는 1993년 7월 26일자가 적혀 있었으나 Western은 1993년 7월 28일까지 팩스를 수령하지 않았다.

검사증명서 수령 후 Western은 목재를 한국의 Nam Moon에게 선적하였다. Western의 누군가가 팩스 검사증명서에 “원본” 스탬프를 찍고 그것을 Western의 운송주선인인 A.C.Wilson社에게 보냈다. 1993년 8월 19일 A.C.Wilson社의 사장인 Arlene Wilson은 서류와 결제어음을 Shinhan은행 뉴욕지점에 제시하고 Western을 위해 신용장에 의거한 대금결제를 요청하였다. Shinhan은행 뉴욕지점의 직원인 Diane Masone는 제시된 서류를 조사하고 검사증명서가 팩스 사본이고 원본 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1993년 8월 20일 Masone은 Wilson에게 전화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Shinhan은행 뉴욕지점은 대금결제를 거절한다고 말하였다. Wilson은 Masone에게 한국의 Shinhan은행에 전보를 쳐 신용장에 의거한 지급승인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였다. Masone은 한국의 Shinhan은행에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인 검사증명서가 제시되었다는 불일치사항을 알리고 대금결제여부를 긴급히 알려달라는 전보를 쳤고, 1993년 8월 25일 동은행으로부터 불일치를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Masone은 Wilson에게 “Shinhan은행 뉴욕지점은 대금결제를 거절하고 지난 주에 제시된 서류를 반송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첫째, 팩스가 UCP 400 제22조 (c)항에서의 원본인지의 여부 둘째, UCP 400 제16조 (b)항은 수익자가 불일치한 서류를 제시했을 때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일치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UCP 400 제22조 (c)항에서 서류를 원본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누가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고 인증하는가에 대하여는, 서류의 작성자만이 서류에 원본이라고 표시하고 그 표시를 인증함으로써 사본을 원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서류의 작성자인 Nam Moon社 또는 신氏가 아닌 수익자인 Western이 서류에 “원

본” 표시를 하고 Nam Moon社 또는 신氏가 팩스를 인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검사증명서의 팩스사본은 불일치한(nonconforming) 것이며, 따라서 제시는 결함이 있고 신용장하의 대금지급의 거절을 정당화한다고 판시되었다.

5. Voest-Alpine Trading Co. v. Bank of China³⁶⁾

1995년 6월 23일 원고인 Voest-Alpine은 Jiangyin Foreign Trade Corporation(JFTC)에 총 120만 달러의 스티렌 모노머 1,000 metric tons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결제를 위해 JFTC는 피고인 Bank of China를 통해 신용장을 신청하였다. 신용장은 同은행을 통해 1995년 7월 6일 발행되었고 그 번호는 LC9521033195이다. 신용장에는 일단 물품이 중국의 Zhangjiagang으로 선적되면 Voest-Alpine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고, Voest-Alpine는 신용장에 규정된 바의 서류를 Bank of China에 제출하였다.

수 많은 오식(誤植) 이외에 Voest-Alpine의 이름이 "Trading USA"부분을 거꾸로 하여 "Voest-Alpine Trading USA Corp."대신에 ""Voest-Alpine USA Trading Corp."으로 기재되었다. 목적항은 또한 한 곳에 세 번째 "a"를 빠뜨린 "Zhangjiagng"로 잘못 오기되었다. 그렇지만 신용장에는 계약이 UCP 500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물품이 선적할 준비가 될 무렵에 스티렌 모노머의 시가가 Voest-Alpine과 JFTC간의 원래의 계약 가격보다 상당히 하락하였다. JFTC는 시가의 하락에 비추어 가격인하를 요구했지만 Voest-Alpine은 이를 거절하고 1995년 7월 18일 스티렌 모노머를 선적하였다. 모든 필요한 검사와 서류준비가 완료되어 1995년 8월 1일 Voest-Alpine은 신용장에 명기된 서류를 서류제시은행인 Texas Commerce Bank에 제시하였다. 同은행은 Voest-Alpine과 관련된 제시서류와 신용장간의 불일치를 발견하였다. Voest-Alpine은 주목할 만한 불일치의 어느 것도 지급거절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36) Civil Action No. H-95-4954 United States Distric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ouston Division 2000 U.S. Dist. LEXIS 8223 March 10, 2000, Decided, March 13, 2000, Entered.

Voest-Alpine은 Texas Commerce Bank에 지시하여 Bank of China에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1995년 8월 3일 Texas Commerce Bank는 특급우편으로 서류를 Bank of China에 보냈다. 신용장에 따르면 수익자인 Voest-Alpine은 선적일의 15일 이내 즉, 1995년 8월 2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가 1995년 8월 1일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신용장하에서 적시에 제시되었다. Bank of China는 1995년 8월 1일에 서류를 받았다.

1995년 8월 11일 Bank of China는 신용장과 Voest-Alpine이 제시한 서류간에 7개로 추정되는 불일치를 Texas Commerce Bank에 텔렉스로 통지하였으며, 이 중 6개가 본 소송의 主因이다. Bank of China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의 이름이 신용장에 기재된 이름과 다르다. 2) Voest-Alpine은 "original"대신에 "duplicate"와 "triplicate"로 표시된 B/L을 제출하였다. 3) 송장, 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에 "original"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4) 검정보고서의 일자가 선하증권일자보다 늦다. 5) 수익자의 인증된 팩스 사본에서의 신용장번호가 잘못되었다. 6) 목적항이 원산지증명서와 수익자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당행은 관련 불일치에 관하여 개설의뢰인과 접촉하고 있으며 귀행의 위험과 임의선택으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한 6개의 불일치중 주제와 관련된 3)의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Bank of China는 포장명세서에 "원본"이라고 스탬프를 찍지 않은 것은 불일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서류들은 푸른 잉크로 세 개의 약간 다른 서명을 갖고 있으므로 문면상 명백히 원본이다. 신용장이나 UCP 500에서 원본서류가 그렇게 표시되어야 할 요건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ICC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에서는 "은행은 서류발행자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서류도 원본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CP하에서 수익자가 "원본"이라고 스탬프를 찍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류에 푸른 잉크로 세 개의 약간 다른 서명이 있는 경우 즉, 서류가 문면상 명백히 원본인 경우 원본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불일치가 아니므로 발행은행이 서류제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³⁷⁾

37) 이 판결은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2002 U.S. App.

6. 제일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사건³⁸⁾

원고 제일은행은 1996. 11. 21. 수출자인 문상운과 사이에 수출어음보험부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문상운이 수입자인 중국의 위해수출입공사에 점유를 수출하면서 발행한 미화 57,802.08\$의 수출환어음 및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

이 신용장은 UCP 5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서는 상업송장 3통, 포장명세서 3통 및 위해수출입공사의 류우웨홍이 발행하고 위해수출입공사의 명판이 찍힌 검사증명서 원본 1통을 요구하였다.

원고인 제일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 시틱산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은행은 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에 원본 표시가 없고, ② 검사증명서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와 같은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가 없음을 이유로 제출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신용장조건으로 회사의 스탬프가 찍힌 검사증명서 1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원본 표시도 없고 또한 스탬프가 없는 것이 신용장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보는가의 여부이다.

원심에서는 원본 표시가 없으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명판도 찍혀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매입은행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타자기가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서류의 작성명의인이 되는 위해수출입공사의 레터헤드가 포함된 용지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용장조건에 서류의 작성자로 지명된 류우웨홍이 자필로 서명하고, 나아가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서류 작성자의 의도가 원본을 작성하려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달리 서류 문면상에 '원본'이라는 추가적인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원본의 표시를 요한다고 판단한 부분

LEXIS 7412 April 23, 2002, Decided에서도 지지되었다.
38)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은 신용장거래상 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작성회사의 스탬프가 없는 것이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그 용지가 우선 레터헤드에 위해 수출입공사의 것임이 표시되어 있고, 작성자인 류우웨홍의 서명과 개인인장이외 류우웨홍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HUAT 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류우웨홍이 개인의 자격이 아닌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스탬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다 하여 신용장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는 점이 신용장조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용장거래상 서류와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³⁹⁾

7.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 사건⁴⁰⁾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는 중국 청도 소재의 SHANDONG ANIMAL BY-PRODUCTS IMPORT & EXPORT CORPORATION과 미화 83,357.30달러의 미완성 남성용 패딩자켓 합계 4,232벌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영국제상사는 1994년 7월 12일 대금결제를 위해 우리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였다. 신용장은 UCP 500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용장의 조건으로 상업송장 3통, 포장명세서 3통, 피고 회사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3통, 원산지 증명서 3통을 요구하였다.

39) 채동현,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대상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pp.308~313; Chang-Soon Thomas Song, “Original documents and the signature requirement”, DCINSIGHT, Vol. 8 No. 4, October-December 2002, pp.19~20.

40)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42053 판결

산동애니멀은 1994. 9. 26. 이 사건 신용장에 의하여 위 수입화물 중 총 3,139벌, 미화 61,829.95달러 상당의 물품을 선적한 다음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중국의 교통은행에 상업송장,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제시하여 신용장매입을 의뢰하였고, 교통은행은 위 서류들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미화 61,829.95달러를 지급하여 신용장을 매입하였다. 그 후 교통은행은 1994. 10. 9.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송부함과 동시에 신용장상의 별도로 지정된 대금결제은행인 뉴욕의 케미칼은행에 신용장매입대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교통은행에 위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케미칼은행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은행들간의 대금결제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1994. 10. 13. 피고 회사에게 교통은행이 송부한 환어음,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신용장매입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신용장 서류들 중 ① 검사증명서(I/C)원본 미비, ② 개설신청인 주소 상이 등을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복사기로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복사한 후 추가적인 서명이 없이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로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은 검사증명서를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심에서는 문제의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고 개설은행인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UCP 제20조 (b)항 및 ICC 은행위원회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UCP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⁴¹⁾

41) 채동헌, “복사된 검사증명서에 추가 서명이 없이 스탬프로 원본 표시만 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상 원본서류인지 여부-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다42053 판결”, BFL

지금까지 살펴본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외 사례의 주요내용의 비교

사건	분쟁서류	쟁점	판결	평가
Glencore사건 (1996)	수출상의 증명서	“original” 표시가 없음	word processor로 작성되어 사 진복사된 후 서명된 경우 서류에 ‘원본’표시가 있어야 함.	UCP 500 제20조 (b)항을 좁게 해석
Kredietbank사건 (1999)	보험증권	“original” 표시가 없음	컴퓨터에 의해 작성되어 회사의 푸른 칼라로고와 투명무늬를 포 함하는 용지에 레이저프린터에 의해 인쇄되어 서명된 보험증권 은 명백히 원본서류이므로 ‘원본’ 표시는 불필요함.	UCP 500 제20조 (b)항을 넓게 해석
CIC v CMB 사건 (2002)	포장명세서, 중 량/ 품질증명서	“original” 표시가 없음	명백히 원본이거나 UCP 400/500 이전에 수리되었을 것이라면 ‘원 본’표시는 불필요함.	ICC 원본결정문 반영
Western Intl’ 사건 (1994)	검사증명서	수익자가 “원본”표시한 서류의 팩스본이 원본인지의 여부	서류작성자가 아닌 수익자가 서 류에 “원본”표시를 하고 서류작 성자가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의 팩스 사본은 불일치한 것으로 원본이 아님.	
Voest-Alpine Trading 사건 (2002)	송장, 포장명세서, 원 산지증명서	“original” 표시가 없음	명백히 원본인 서류에 원본표시 를 하지 않은 것은 불일치가 아 님.	ICC 원본결정문 반영
제일은행 대 한국수출보험공사 (2000)	검사증명서	“original” 표시도 없고 스탬프도 없는 것이 하자인지 여부	서류작성자가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 으므로 서류문면상 원본이라는 표시는 불필요하고, 회사의 스탬 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서 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정당한 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므로 신용장 조건에 위반된 것 으로 보지 않음.	ICC 원본결정문 반영

우리은행 대 대영국제상사 사건 (2003)	검사증명서	복사본에 '원본'이라는 스탬프만 찍힌 경우 원본인지의 여부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 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 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 여 '원본'이라는 단어만을 잉크 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UCP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 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 없음.	ICC 원본결정문 반영
----------------------------------	-------	---	---	--------------------

자료: 관련 자료 참조하여 저자 직접 작성

V. 결 론

지금까지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UCP 600이전의 관련 규정, UCP 600하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원본서류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관련규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UCP 400의 제22조 (c)항과 UCP 500의 제20조 (b)항을 비교해 볼 때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서명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사본서류의 요건 및 복수서류의 요건이 추가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UCP 500의 제20조 (b)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Glencore사건의 결과로 ICC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12일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발표하여 UCP 500의 제20조 (b)항의 정확한 해석을 도모하였다. 이후 이 ICC의 결정문을 개정의 기준으로 하여 UCP 500 제20조 (b)항 및 (c)항, 상기의 ICC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과 ISBP(2003)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UCP 600의 제17조가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서류제시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ISBP (2003) 32를 반영하여 적어도 한부의 원본제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일부를 수용하여 원본의 의미와 원본을 표시하는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사본서류의 요건에 대하여는 ISBP(2003) 34를 반영하여 원본 또

는 사본의 어느 쪽의 제시에 의하여도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서류의 요건에 대하여는 신용장이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적어도 한 통의 원본이 나머지 부수의 사본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UCP 500 제 20조 (c)항 (ii)호의 규칙을 수정하고 있다. 이 밖에 UCP 500과 달리 원본 표시의 요건을 제거하였고 또한 UCP 500에서 언급하는 서류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원본서류에 관한 UCP 600 제17조 (b)항은 은행이 원본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전의 ICC의 관련 규정보다 은행을 비롯한 신용장 관련당사자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 거래과정의 신속화와 직결되어 신용장이 여전히 효율적인 대금결제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원본서류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서류면에서 검사증명서가 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포장명세서가 2건, 기타 중량/품질증명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수출업자의 증명서, 보험증권은 각 1건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의 제출서류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할 때 검사증명서 요구문언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서류가 명백히 원본인 경우에는 원본표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총 7건 중 4건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총 7건의 사례 중 ICC 결정문이 발표된 1999년 7월 이전의 사례는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Western Intl' 사건(1994)은 별도로 하고, Kredietbank 사건(1999)의 판결은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과 같은 취지이며 또한 해당 서류가 UCP 600 제17조하에서 수리가능한데 비해, Glencore 사건(1996)은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이나 UCP 600 제 17조의 규정과 상반된 내용의 판결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사건에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이나 UCP 600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원본 서명이 있는 서류는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원본으로 되어 원래의 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되지만 나머지 사건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1999년 7월 ICC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 발표 이후의 사례들은 모두 이 결정문을 수용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UCP 600 제17조를 적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이 원본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ICC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을 기준으로 탄생한 UCP 600 제17조 (b)항은 앞으로의 원본서류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신용장관계 당사자들은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과 UCP 600의 관련 규정 및 ICC 은행위원회의 원본서류에 관한 결정문의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서류가 원본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어 신용장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신뢰가 회복되어 신용장의 사용이 증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철,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사례연구”, 국
제상학 제16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 남풍우,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원본서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4호, 한국상품학회, 2001.
- 대한상공회의소 편집부,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ISBP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
상공회의소, 2007.
- 유재걸·한수범, “전자무역시대의 원본서류에 대한 UCP 600 최종개정안의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7권 4호, e-비즈니스학회, 2006.
- 채동현,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 저스티스 70호, 한국법학원, 2002.
- , “복사된 검사증명서에 추가 서명이 없이 스탬프로 원본 표시만 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상 원본서류인지 여부”, BFL 제8호, 서울대학교 금
융법센터, 2004.
- 홍종덕, 신용장과 ISBP, 두남, 2005.
- 飯田 勝人, “信用狀取引における書類の原本とコピー”, 國際商務論の諸問題- その
理論と取引慣行, 同文館, 1998.
- 朝岡良平, 実務家のための逐条解説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会, 1985.
- Alexia Ganotaki, “Originals sin”, Trade & Forfaiting Review, Vol 6
Issue 4, 2003.
- Bernard Wheble, DOCUMENTARY CREDITS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ICC Publication
No.411, 1984.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Chang-Soon Thomas Song, “Original documents and the signature
requirement”, DCINSIGHT, Vol. 8 No. 4, October-December 2002.
- EP Elling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their development and the current revision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7.
- Howard N. Bennett, “Originals sin under the UCP”,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1.
-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shing, Inc., 2007.
- 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 Article 20(b)”, 1999.
- Felicity Monteiro · Wilson Harle, “The UCP 600”, New Zealand Law Journal, September, 2007.
- James. 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 , THE MAJOR STAGES IN THE EVOLUTION OF LETTER OF CREDIT PRACTICE[PART 2 OF 2], Documentary Credit World, January, 2004,
- James. E. Byrne and Lee H.Davis, “New Rules for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UCC Law Journal, Winter, 2007.
- Karen Scott, “DOCUMENTARY CREDITS: ANOTHER ORIGINAL STORY”,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3.
- Ravi Mehta, “Original Document” Revisited, LC VIEWS Newsletter No. 105.
- Ross P. Buckley,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GW J.Intl’ L. & Econ., Vol.28, 1995.
- Standard Chartered Bank, “UCP 600–An analysis of Articles 14–18 and 28”, NEWSLETTER Issue 4, May 2007.
- Janet Ulph, “THE UCP 600: DOCUMENTARY CREDIT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Business Law, June,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an Original" Document and Copies under UCP 600

Huh, Jae Chang

It is a basic rule in the credit law that original documents are requir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credit. Due to modern technology enabling documents to be produced in many ways it may not always to decide whether a document is original or a photocopy.

In consideration of modern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new methods of document production, ICC has drawn up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in Article 22 (b) of UCP 400 for the first time. The equivalent provision in UCP 500 is Article 20 (b).

As a result of many queries to ICC Banking Commission on what constitutes an "original" documents under UCP 500 and several court cases in connection with original documents,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issued Decision on original documents in July 1999. Based on this Decision, the ICC dealt it in Article 17 under UCP 600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07.

There are some changes, replacements and new provisions of UCP 600 concerning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Importers, exporters, insurance companies, other third parties and, above all, banks should pay attention to som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UCP 600 concerning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v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pre-UCP 600. Secondly this study

considers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Thirdly this study compares the provisions under pre-UCP 600 with the provisions under UCP 600.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decided both home and abroad in connection with original documents.

This paper contribute to help the parties to letters of credi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n 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under UCP 600.

Key Words : Original documents, Copies, ICC Decision, UCP 600
